

2021년도 제1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8.(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6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389건(안건번호 제2021-77197호~7831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77197호~77208호(순번 1번~12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와 출판물,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77209호~77220호(순번 13~24번)는 블로그에서 일본 영상물(방송·영화)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77898호~77899호(순번 702번~703번)는 1939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을 복제·전송한 사안으로, 저작권 존속기간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77221호~77897호(순번 25번~701번), 77900호~78314호(순번 704번~1118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34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6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 및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제2호 안건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안건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쪽수를 기재하고 전체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38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118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12번은 실명(3명)과 익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와 출판물, 영화를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

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와 출판물 '△△△△△', '▲▲▲▲▲', 영화 '□□□□□' 등을 각각 30포인트에서 115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4개 게시물임.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1화~제27화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7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1화~제306화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1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와 출판물, 영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2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3번~24번은 실명(3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 '◆◆◆◆◆'와 애니메이션(영화) '★★★★★' 등을 우리말 자막 등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총 30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1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1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순번 2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3번~2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24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02번~70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

를 요청한 건임(2건). 순번 702번~703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 '◆◆◆◆◆'를 스트리밍 형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총 2건).

(순번 70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는 □□□□□ 미국에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국내에는 <<<<< 최초 개봉된 이래로 수차례 재개봉을 거쳐 가장 최근인 <<<<< 리마스터링하여 재개봉되었음. 미국에서는 공표 후 95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되므로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 또는 ▶▶▶▶▶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

순번 702번은 1.9Gb, 순번 703번은 938.5mb에 영화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화질과 자막의 내용으로 보아,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제공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은 재개봉 대상인 리마스터링 영상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국내에서 외국인저작물의 보호기간 또한 국내법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동 게시물은 국내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 즉 해당 저작물을 복제·전송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702번~70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가 영화 “◆◆◆◆◆”의 리마스터링본을 수입해서 개봉한 사실을 보호원이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게시물명 앞에 중점보호저작물이라고 표시된 것으로 볼 때 재개봉 및 상영 성적과 연관이 있음. 참고로 동 게시물은 보호원이 직접 모니터링한 건으로 외부에서 신고를 받은 사안은 아님.
- A 위원: 순번 702번은 1.9Gb, 순번 703번은 938.5mb인데, 동일한 영화가 왜 용량이 다른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두 게시물의 화질 차이에 따른 것임. 순번 703번의 경우, 예를 들어 스트리밍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용량을 줄일 목적으로 화질을 더욱 낮춘 것일 수 있음.
- A 위원: 동 게시물이 ♠♠♠♠♠♠에 개봉한 리마스터링본인지, 아니면 최초 제작본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 최초 개봉 이후에 DVD 발매 목적 등으로 수차례 리마스터링을 하였을 것이나, 동 게시물은 적어도 올해

극장 재개봉 목적으로 리마스터링한 버전은 아닌 것으로 보임.

- A 위원: 순번 702번의 영화를 직접 시연해볼 수 있을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최근 영화들의 경우 비슷한 길이라면 보통 용량이 5~6Gb 이상인 데 반해, 이 게시물은 1.9Gb로 용량이 낮음.
- A 위원: 만약 이 게시물이 리마스터링본이라고 가정할 시 화질, 음질 등의 개선을 이루었다면 사안에 따라 창작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임. 또한 리마스터링본을 가지고 화질을 떨어트린 후 게시했을 수도 있음.
- B 위원: ♥♥♥♥에 재개봉한 리마스터링본과는 화질, 자막 등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나, 오리지날본인지 또는 중간에 여러 차례 리마스터링된 버전 중 하나인지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임.
- B 위원: 당초 이 영화는 컬러 필름을 사용한 컬러 영화가 아니라 흑백 필름으로 촬영한 후에 손으로 채색(colorization)을 한 것은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렇지 않음. 처음부터 컬러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했다는 기록이 확인됨.
- A 위원: 동 영화는 ●●●●●을 수상한 최초의 컬러 영화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흑백으로 촬영한 후에 손으로 채색(colorization)하여 컬러 영화로 만들었다면 ●●●●● 수상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

따라서 당초에 컬러 필름을 사용한 영화로 보는 것이 적절할 해석일 것으로 보임.

- A 위원: 최초 개봉된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고, 리마스터링본 또한 현재 극장 상영이 종료되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임.
- 강나래 전문위원: 리마스터링본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기존에 존재하는 영상에 대해 단지 품질 향상을 기하였을 경우 과연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함.
- A 위원: 사진저작물의 경우 현상과 인화도 창작성의 대상이 됨. 영화 리마스터링 시 화질, 음질 등의 개선이 중요한데, 어떤 컬러를 새롭게 입히느냐에 따라 영화 전반의 느낌에 영향이 클 수 있고 따라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강나래 전문위원: 리마스터링과 달리 후처리 작업 수준으로까지 영화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리마스터링이라고 하면 창작성의 영역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리마스터링된 최신 개봉판의 원저작물과 별도의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 영화의 화면비와 자막을 대표적으로 확인하여 비교해보았음. 리

마스터링본의 화면비는 기존 영화의 4:3 비율에서 변형이 없었으며, 영화의 창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이, 내용 등의 변경 또한 확인되지 않았음. 한편 번역 부분은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과 재개봉 영화의 자막을 비교하여 보았으나, 자막이 일치하지 않아 심의대상 게시물은 재개봉 영화의 자막을 복제·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A,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리마스터링본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 저작권 존속기간이 불명확해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02번~703번의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25번~701번, 704번~111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컨저링 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6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컨저링 2'를 30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2시간 13분 52초를 제공하고 있음.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에서 2016. 6. 9. 배급한 미국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프렌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92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프렌즈'를 1,120포인트에 제공 중임. 시즌 4의 1화~24화 완결본 전체를 제공하고 있음. 미국 NBC에서 1997. 9. 25. ~ 1998. 5. 7.까지 방송한 드라마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25번~701번, 704번~111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25번~701번, 704번~1118번은 모두 불법 복제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5번~701번, 704번~111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77898호~77899호(순번 702번~703번)는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77197호~77897호(순번 1번~701번), 77900호~78314호(순번 704번~1118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15.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